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85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해식·서영교·박상혁

한병도 · 김성회 · 윤후덕

홍기원 • 박정현 • 황명선

정을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 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'천원의 아침밥'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·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,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·중·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,

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질을 관리하는"을 "질을 관리하고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"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건강관리와 급식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교육재정) ① 국가와 지방	제7조(교육재정) ①
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	
달성하거나, 재난 등 급격한 교	
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	
의 <u>질을 관리하는</u> 데 필요한	질을 관리하고 학생 복지를
재원(財源)을 지원하거나 보조	<u>향상시키는</u>
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건강관리와 급식 지원)
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
	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
	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
	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